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5년도 기준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	150분 이상	49,160
60분 이상	24,580	180분 이상	55,350
90분 이상	33,120	210분 이상	61,670
120분 이상	42,160	240분 이상	68,030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▶ 본인부담금

구분	일반 대상자	40% 감경대상자	60%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재가급여	15%	9%	6%	면제
시설급여	20%	12%	8%	
복지용구	15%	9%	6%	

▶ 재가급여(2025.01.01. 기준)

가. 월 한도액

등급	월 한도액	본인부담금		
		일반 대상자	40% 감경대상자	60%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
1등급	2,306,400 원	345,960 원	207,576 원	138,384 원
2등급	2,083,400 원	312,510 원	187,506 원	125,004 원
3등급	1,485,700 원	222,855 원	133,713원	89,142 원
4등급	1,370,600 원	205,590 원	123,354 원	82,236 원
5등급	1,177,000 원	176,550 원	105,930 원	70,620 원
인지지원등급	657,400 원	98,610 원	59,166 원	39,444 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